

의안번호	2214393
의 퇴 인	이인영의원
회 답 일	2025.11.24.
추 계 번호	25D6261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만 1억 8,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(안 제68조의4 제2항)	189	-	-	-	-	1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8조의4 (고독사 예방 및 관리)	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	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8조의4 (고독사 예방 및 관리)	- (미대상)	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
	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‘실태조사’의 추가재정 소요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(고독사 실태조사 지원)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보건복지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¹⁾에 따라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실태조사 개요: 2022년

-
- 소관부처: 보건복지부
 - 연구과제: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
 - 수행기관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 - 조사기간: 2022.4.~2022.12(표본 9,471명 대상 심층설문).
 - 소요예산(2022년 기준): 1억 8,900만원
-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시한 “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”의 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함
 - 실태조사 주기: 5년
 - 실태조사 단가: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1)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고독사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만 1억 8,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(안 제68조의4 제2항)	189	-	-	-	-	18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61	jsy@na.go.kr